

※ 본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시 강의한 원고를 편집한 것입니다.

#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

한국PL법연구원

## 가. 제조물책임법의 목적

- 피해자 보호
- 국민생활의 안전향상
-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



## 나. 제조물책임법의 원칙

- 우리나라 : 제조물의 결함책임(민법은 과실책임의 원칙)
- 미국 : 엄격책임(Strict Liability)
- 유럽 : 무과실책임
- 일본 : 무과실책임

※ 미국, 유럽,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표현은 달리하고 있어도 모두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공통됨

## 다. 제조물의 범위

-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[따라서 부동산(토지, 건물 등)은 제외됨.]
- 미가공된 1차 농·수·축산물은 제외(그러나 프랑스, 룩셈부르크, 노르웨이, 핀란드, 스웨덴은 제조물물에 포함시키고 있음)
-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

## 라. 결함의 개념

- 결함과 하자의 구별
  - 결함(Defect) :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
  - 하자(Flaw) : 상품 적합성이 결여된 것

결함의 유형

○ 제조상의 결함

-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·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·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○ 설계상의 결함

-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○ 표시(지시·경고)상의 결함

-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·지시·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

## 마. 책임주체인 제조업자의 범위

제조·가공업자(완성품, 부품·원재료)

수입업자

표시제조업자 : 제조물의 성명, 상호,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제조·가공·수입업자로 표시한 자

오인표시제조업자 : 제조·가공·수입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

공급업자(판매업자) : 보충적인 책임

-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·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바. 입증책임

입증책임분배의 원칙 : 권리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(소비자)가 입증하여야 함

○ 제조물의 결함

○ 손해의 발생

○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

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원 실무상으로 '사실상의 추정', '위험영역 이론' 등을 활용하여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.

PL법 시행 전 법원의 제조물책임판결의 경향

- 첫째,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현재에도 제조물책임의 정신을 반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비자(피해자)를 보호
- 둘째, 입증책임에서 결함의 존재와 과실에 대한 “사실상 추정 원칙”을 원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곤란을 완화
- 셋째,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과 지시, 경고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으며, 소비자 기대기준을 중심으로 결함을 판단
- 넷째, 행정기관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은 최저한 기준이며, 그것이 결함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
- 다섯째,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더욱 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

사. 손해의 발생

손해발생의 대상

-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확대되어 발생하여야 함
  - 제조물책임법은 확대손해에 대한 구제
  - 소비자안전의 중시
- 제조물자체에 피해 그친 겨우는 제외(기존의 민법에 의한 구제 가능)

손해배상의 종류

- 전보적 손해배상(compensatory damages)
  -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
  - 인적손해(재산적, 비재산적 손해)
  - 물적손해(제조물 이외의 다른 재산손해)
- 징벌적 손해배상(punitive damages)
  - 미국식 손해배상 : 명백한 증거에 의한 악의성 입증
  - 맥도날드 커피사건, 포드 핀토사건, 흡연피해사건
  - 부과취지 : 악덕기업에 대한 징계, 제3의 기업에 대한 경고, 피해자에 대한 후한 보상

아. 제조업자의 면책사유

-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
- 개발위험의 항변(기술수준의 항변) :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
- 구속적 법령기준의 항변 :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

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

- 원재료·부품제조업자의 항변 :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(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규정)
- ※ 사후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함(시장에서 제품 관찰 의무, 리콜 등의 신속한 사후 회수 조치 요망)
  -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(개발위험의 항변, 구속적 법령기준의 항변, 원재료·부품제조업자의 항변)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.

#### 자.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금지

- 연대책임 :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 - 결함사고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이 10%, 설치업자의 과실이 90%라도 피해자는 제조업자 모두를 상대로 100% 전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음.
- 면책특약의 제한 :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.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 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차. 민법의 적용

-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.

#### 카. 책임기간의 제한

-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
-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음
- 다만,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이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기산한다.

#### 타. 시행시기와 적용 예

- 시행시기 : 2002년 7월 1일 시행
- 적용범위 :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된 제조물로부터 적용